

발간등록 번호
진흥원-2025-316

#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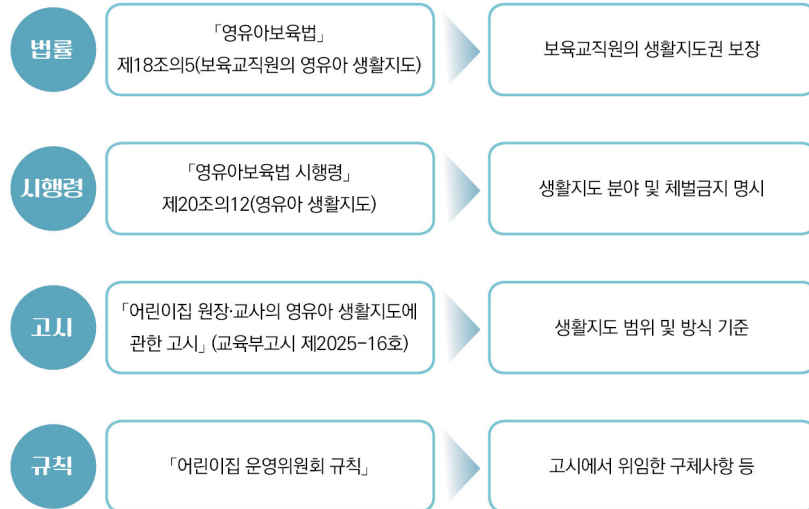


##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 사항

- 이 해설서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기준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고, 실제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 해설서는 최근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5-16호, 2025.6.22. 제정 및 시행)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 해설서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을 어린이집이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시된 예시는 고시의 취지를 바탕으로 생활지도가 일관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설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 여건(규모, 연령구성, 운영유형, 운영시간 등)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되, 영유아의 권익 보호와 지도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2장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서는 영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지도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각 지도 방식에 관한 정의, 지도 방법 및 실시 요건, 현장 적용 예시 및 유의점, Q&A,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유아 생활지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 해설서에서 제시하는 ‘관련 판례’는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사례별로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에 대하여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고시 해설서의 법적 근거 체계〉



# CONTENTS

<b>I</b>	<b>총칙</b>	
	1. 목적 .....	2
	2. 정의 .....	5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	15
<b>II</b>	<b>생활지도 범위와 방식</b>	
	1. 생활지도의 범위 .....	24
	2. 생활지도의 방식 .....	30
<b>III</b>	<b>그 밖의 사항</b>	
	1.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	74
	2.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79
	3. 이의제기 .....	81
	4. 기타(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임 사항) .....	83
	5. 재검토 기한 .....	85
<b>IV</b>	<b>부록</b>	
	1.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88
	2. 아동학대 관련 판례 .....	94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I

## 총칙

1. 목적	2
2. 정의	5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15

## 01

## 목적



##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 고시에는 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지침과 이와 관련된 바람직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한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로서의 책무 등이 규정됨
- 원장 및 교사는 학업(영유아의 놀이와 일상 경험을 통한 배움)\*,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영유아 생활 전반에 걸쳐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의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법령상 ‘학업’이라는 용어는 영유아에게 교과 중심 지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일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배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에 본 해설서에서는 ‘학업(영유아의 놀이와 일상 경험을 통한 배움)’으로 병기하여 현장에서 오해 없이 적용하도록 표기함

- 영유아의 생활지도는 놀이 및 기본생활습관을 포함한 보육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건강·위생·안전을 지키고 정서조절과 또래 및 성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과정을 포함함
- 이러한 생활지도는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음

###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어린이집 생활지도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과정이므로 원장과 교사, 보호자(학부모)가 상호 협력하여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야 하며, 영유아도 생활지도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함
- 이 고시에서의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도 방식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개별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도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해야 함
- 생활지도 과정에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은 법령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이 고시는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생활지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정당한 지도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생활지도는 정당한 보육 활동으로 간주되며,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02

## 정의



## 가. 원장

## 관련 조문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원장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고 민원처리 및 행정 전반을 관리하며, 보육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기관의 대표자로서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과 복무를 관리함. 또한, 보호자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민원에 성실히 대응할 책임을 짐
- 이 고시에서 원장은 교사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나. 교사

### 관련 조문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동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보조교사"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서의 "대체교사"로 한다.
- 교사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보조교사,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체교사를 포함함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지원,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활동의 계획과 실행, 안전관리, 보호자 상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며,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보수 교육 등으로 부재 시 보육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함
- 이 고시에서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생활지도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함



##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다. 영유아

### 관련 법령 및 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

-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받는 모든 아동을 포함함
- 영유아에는 영아(0세~2세)와 유아(3세~취학 전)가 모두 포함되며, 발달단계에 따라 보육 및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라. 영유아 생활지도

### 관련 조문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 활동 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의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목적) 영유아 생활지도는 놀이, 배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 영유아가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영유아 생활지도는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 (유의점) 생활지도는 영유아의 행동을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과 생활습관을 배워 올바른 삶의 방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임



## 마. 조언

### 관련 조문

#### • 제2조(정의) 제4호

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목적) 조언은 영유아 혹은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조언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도우며, 가정-어린이집 간 협력과 지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 (유의점) 조언을 하기에 앞서 영유아가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조언의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바. 상담

### 관련 조문

#### • 제2조(정의) 제4호

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

- (목적) 상담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당면한 문제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원장과 교사, 영유아, 보호자가 영유아의 문제 예방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조력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의점) 고시 내 생활지도 방식의 상담과 전문 심리상담은 구분됨
  - 당면한 문제가 영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수준이라면 생활지도 방식의 상담을 적용할 수 있음
  -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 원장과 교사, 영유아, 보호자 상호 간의 상담요청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상담거부 또는 중단이 가능함



## 사. 주의

### 관련 조문

#### • 제2조(정의) 제4호

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목적) 주의를 영유아의 행동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거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주의를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지도가 필요함
- (유의점) 주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학습임을 인식해야 함. 영유아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안내하고, 주의 시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지도해야 함



## 아. 훈육·훈계

### 관련 조문

#### • 제2조(정의) 제4호

라. "훈육·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목적) 훈육·훈계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지도과정으로, 단순히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스스로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임

\* 이 해설서에서 '문제행동'이란 병리적 의미가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또래 관계에서 추가적인 지지와 지도가 필요한 행동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함

- (필요성) 훈육·훈계는 영유아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또는 발달 수준에 비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 (유의점)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조언이나 주의로 어려운 경우 사용하도록 하며, 훈육·훈계가 필요한 상황과 방법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생활지도 기준 및 어린이집 규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자. 보상

### 관련 조문

#### • 제2조(정의) 제4호

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목적) 보상은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통해 내적 동기를 높이고, 그 행동이 긍정적으로 강화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함
- (유의점) 보상은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물질적 보상보다는 언어적 격려, 칭찬, 인정 등 무형의 보상을 우선 사용함



## 03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 관련 조문

#### • 제3조(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 조문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한 것임
- 영유아의 생활지도 과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고, 영유아 또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관찰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책무

### 관련 조문

#### • 제3조(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책임

-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지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해야 함
-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른 영유아의 보육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
- 원장은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린이집 규칙으로 정할 때 어린이집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함. 또한, 그 내용을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에게 공표해야 함
- 원장은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침해될 경우, 이를 은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
- 교사는 원장의 방침을 이해하고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함

## ☑ 원장과 교사의 권리

-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영유아를 정당하게 지도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원장과 교사는 안전한 어린이집 문화조성과 보육활동을 위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과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영유아의 기본권 침해나 보호자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보호자의 책무

### 관련 조문

#### • 제3조(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 ④ 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 보호자의 책임

- 보호자는 어린이집 규칙과 운영 방침을 존중해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함
- 보호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자녀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이나 가정환경의 변화 등을 어린이집에 신속하게 알리고 교사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 보호자는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보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보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생활지도 방침과 내용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생활지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협력하여야 함

### ✔ 보호자의 권리

- 보호자는 어린이집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어린이집 규칙에 대해 안내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보육환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언 및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음

## ☑ 현장적용방안

- ①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 시 보호자에게 생활지도 원칙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확인절차를 거침
- ② 보호자 상담주간 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생활지도 원칙, 자녀의 발달 및 보육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

##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영유아의 책임

### ☑ 영유아의 책임

- 영유아는 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함
- 영유아는 다른 영유아의 안전과 놀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래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
- 영유아는 규칙과 약속을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함
- 영아(0세-2세)는 교사와 보호자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기본생활습관과 긍정적 행동을 배우며, 유아(3세-취학 전)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

### ☑ 영유아의 권리

- 영유아는 안전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
-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함
- 영유아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및 생활을 보장받으며, 놀이와 일상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음

#### 참고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3조(보육 이념)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제4조(책임)

-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 제2조(기본이념)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II

##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1. 생활지도의 범위 24
- 2. 생활지도의 방식 30

## 01

## 생활지도의 범위



## 관련 조문

## •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4조는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제1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영유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생활지도의 근거임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놀이 참여 태도) 영유아가 자발적인 놀이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 다른 영유아의 놀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
- (기본생활습관 형성) 식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편식이 심한 경우, 손 씻기·양치 등 위생 습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옷 입기·소지품 정리 등 자기관리 행동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

## ☑ 제2호: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중재하는 생활지도의 근거로, 신속하고 단호한 개입이 요구됨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신체적 위해) 다른 영유아나 교직원에게 때리기, 깨물기, 꼬집기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공격적인 행위 등
- (시설물 이용 위험) 계단, 창문, 놀이터 시설물 등 어린이집 시설을 위험하게 이용하거나 보행 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 (위생 및 건강)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거나, 자신의 몸 등을 씻지 않아 청결하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타인의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등
- (응급상황) 낯선 사람을 따라가려 하거나, 위험한 물건(칼, 가위 등)을 만지려고 하는 등 즉각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한 행위 등

### ☑ 제3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 권한인 보육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동시에 다른 영유아가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재하는 생활지도의 근거임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활동 방해) 놀이, 급식, 낮잠,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 일상적인 보육 활동 중 의도적으로 다른 영유아의 참여, 휴식,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
- (지도 불응) 놀이, 일상생활, 활동 중에 원장 및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지침이나 보육 지시에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아 보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
- (공간 침해) 특정 놀이 영역, 화장실 등을 독점하거나 사용 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영유아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등
- (보호자의 방해) 보호자가 사전 협의 없이 보육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폭언이나 위력을 행사하여 교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 ☑ 제4호: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거나, 영유아 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반 분위기를 저해하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생활지도의 근거임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위해성 물품) 칼, 가위,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화학약품 등 영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등
- (위화감 조성) 고가의 장난감, 지나치게 눈에 띄는 장신구, 고액 현금 등 영유아 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품 등
- (보육활동 방해) 교사의 허락 없이 각종 전자기기(스마트폰, 녹음기, 촬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보육활동을 녹음·녹화하는 행위 등
- (허용되지 않는 용도) 소지품을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등

### ☑ 제5호: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생활습관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사회적 예절 및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생활지도의 근거임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기본생활습관) 식사 중 돌아다니거나 장난치는 등 올바르지 않은 식사 태도, 편식하는 행위 등
- (공동체 예절)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범절, 공공장소에서 차례와 질서지키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 제6호: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를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생활지도의 근거임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부정적 언행) 욕설, 폭언, 속어, 유행어, 신조어 사용이나,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행위 등
- (타인 모욕) 지속적인 놀림, 조롱, 비하하는 말 등으로 타인에게 모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 (감정 표현) 자신의 감정 상태(예. 화남, 슬픔, 불만)를 공격적인 행동(예. 던지기, 소리지르기)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

## ☑ 제7호: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 개선

- 영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갈등을 폭력적이지 않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생활지도의 근거임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갈등 해결 방식) 다툼 등의 갈등을 때리기, 밀치기 등의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행위 등
- (배제 및 괴롭힘) 특정 영유아를 놀이나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힘을 과시하며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 등
- (비협조적 태도) 놀이 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고자질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

## ☑ 제8호: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다른 영유아가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을 포함하는 취약보육 영유아를 편견 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생활지도의 근거임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이해 교육을 놀이, 영상자료 등 영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여 실시.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도 등
- (차별적 행위 중재)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특성이나 언어적 차이 등을 이유로 놀이거나, 의도적으로 놀이에서 배제하는 차별적 행위 중재

### 관련 조문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9호: 그 밖의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 어린이집이 지역적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에서 제시하지 않은 생활 지도에 관한 세부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임

### 생활지도가 필요한 예시

- (시설 이용 및 출입) 어린이집 시설 이용 수칙,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출입에 관한 사항 등
- (세부 수칙) 재난 발생 시 안전 관련 세부 수칙, 등원 시간 지연, 무단 결석 등 운영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세부 수칙 등

## 02

## 생활지도의 방식



## 1

## 조언

## 관련 조문

##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제4호

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제5조(조언)

-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영유아의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정의

- '조언' 지도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포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조언’ 지도의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동 개선을 지원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 조언 지도 방법 및 실시

- 조언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1차적 지도 행위로, 영유아의 일상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긍정적 언어로 안내함
- 조언 전, 영유아의 상황과 원인을 관찰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보호자 대상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여야 함
-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조언 내용을 생활지도 일지 또는 상담기록지에 기록함
-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개입(심리·언어·발달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관련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음

### ☑ 조언 지도의 현장 적용 예시

#### 사례 1

낮잠을 거부하고 우는 영아에 대한 조언 지도

- 상황 : 2세 영아가 낮잠 시간을 거부하고 자주 울음으로 표현함
- 조언 지도 : 교사는 “지금은 쉬는 시간이에요. 눈을 감고 잠시 쉬면 몸이 더 편해질 거예요.”라고 말하며 차분히 기다려주도록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오늘 낮잠 적응을 조금 어려워했어요. 집에서도 일정한 낮잠 루틴을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안내할 수 있음

## 사례 2

놀이 중 장난감을 독점하려는 유아에 대한 조언 지도

- 상황 : 4세 유아가 또래와 놀이 중 자주 장난감을 독점하려 함
- 조언 지도 : “친구랑 나누면 더 즐겁지?” 등 긍정적 언어로 사회적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하 시 “가정에서도 ○○이가 양보 행동을 보였을 때 즉시 칭찬과 격려로 강화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안내할 수 있음

## ☑️ 조언 지도 시 유의사항

- 조언은 지적이나 비난이 아닌 지원 행위임을 명확히 하도록 함
- 교사의 감정이 개입된 언어나 강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보호자의 양육방식을 부정하거나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동일한 사안이 계속 될 경우에는 생활지도 방식을 상위 단계(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아 적용 시 유의사항

- 영아는 언어 표현이 미숙하여 표정, 몸짓, 울음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언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의 몸 상태(졸림, 배고픔, 아픔 등)와 기분 상태(불안, 화남, 피곤함 등)를 확인하여야 함
- 조언하기 전에는 눈을 맞추거나 손을 잡아 주는 등 따뜻한 행동으로 안정감을 주도록 하며, 조언할 때는 긴 설명보다 짧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도록 함

**조언 지도에 대한 Q&A**

Q1

**영유아가 조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유아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 다시 시도하거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부가 반복되면 상담을 통해 심리적 원인을 탐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보호자가 조언을 듣고 불쾌감을 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언의 취지가 영유아의 성장 지원임을 설명하고, 동일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을 완화해 전달합니다. 필요 시 원장 입회하에 조언을 실시합니다.

Q3

**문자메시지나 알림장으로 조언을 보내도 되나요?**

**A** 가능하나, 보호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게시(단체 카톡방 등)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조언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조언 전	영유아 관찰 여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행동이나 문제 상황을 충분히 관찰했는가?
	상황의 객관적 판단	<input type="checkbox"/> 동료 교사나 원장과 협의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는가?
	문제 원인 분석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문제 원인을 파악했는가?
	조언 목표 및 내용 설정	<input type="checkbox"/> 조언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설정했는가?
	보호자 사전 안내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에게 조언할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는가?
조언 시	긍정적 언어 사용	<input type="checkbox"/> 조언 시 부정적 언어가 아닌 긍정적 언어를 사용했는가? (예: "잘못했다"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적절한 시점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조언했는가?
	명확한 전달	<input type="checkbox"/> 조언 내용을 영유아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는가?
	영유아 반응 확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반응을 확인했는가?
조언 후	영유아 변화 확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행동의 변화를 관찰했는가?
	추가 지원 필요성 판단	<input type="checkbox"/> 추가적인 지원이나 전문가 연계가 필요인지 판단했는가?
	기록 완료 여부	<input type="checkbox"/> 생활지도일지 또는 상담기록지에 조언 내용을 기록했는가?
	보호자 피드백 수집	<input type="checkbox"/> 보호자로부터 조언 후 변화를 확인했는가?

## 2

## 상담

## 관련 조문

##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제4호

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

##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제6조(상담)

-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또는 영유아는 영유아의 문제를 해결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보육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 내용은 해당 영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및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 정의

- ‘상담’ 지도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행동, 정서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경청을 통해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상담’ 지도의 목적은 영유아의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정적 성장과 긍정적 행동 변화를 돕는 데 있음

## ☑ 상담 지도 방법 및 실시

- 상담은 반복되거나 원인 파악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보호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함
- 상담 전, 관련 사실을 충분히 수집·기록하고, 필요 시 동료 교사나 원장과 협의하여 상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상담 시에는 비밀유지 원칙을 지키며, 보호자의 인격과 양육방식을 존중하여야 함
- 상담은 보육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하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상호 협의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함
- 상담 결과는 상담 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 추가 상담, 훈육 등의 후속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 상담 지도의 현장 적용 예시

### 사례 1

####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이는 영아에 대한 상담 지도

- 상황 : 2세 영아가 또래에 비해 말이 늦고, 표현 시 손짓과 울음을 주로 사용함
- 상담 지도 : 교사는 언어 관찰기록을 보여주며 “○○가 말로 표현하는 횟수가 또래보다 적은 편이에요. 발음이나 단어 사용이 어려운 모습이 보여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라고 설명하도록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보호자는 언어치료사 상담을 수락하고, 기관과 주 1회 협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례 2

#### 또래 간 다툼이 잦은 유아에 대한 상담 지도

- 상황 : 4세 유아가 친구와 놀이 중 쉽게 화를 내며 장난감을 던지는 행동을 반복함
- 상담 지도 : 교사는 놀이 관찰 기록을 근거로 보호자에게 “최근 ○○가 놀이 중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가정에서도 감정 표현 방법을 함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하도록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보호자는 가정 상황(동생 출산으로 관심 부족)을 공유하고, 교사와 함께 일상 대화와 놀이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하도록 함

## ☑ 상담 지도 시 유의사항

- 상담은 영유아나 보호자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 상담은 주로 보호자 상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영유아와의 개별 면담보다 일상 관찰 및 놀이 상황 기록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을 권장함
- 보호자의 감정(불안, 방어, 죄책감 등)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호자가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 제시’보다 ‘지원 방향 제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상담 중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협력체계를 안내하여야 함
- 상담 중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3자(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며, 상담 내용은 원장 외에는 공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동일한 사안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활지도 방식을 상위 단계(주의, 훈육·훈계 등)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아 적용 시 유의사항**

- 영아는 언어 표현이 미숙하므로, 언어적 면담보다 관찰 중심 상담으로 접근하도록 함
- 상담 시 보호자에게 영아의 발달 수준과 정서적 표현 방식(울음·몸짓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가정에서의 대응이 일관되도록 지원함
- 보호자와의 상담 후에는 영아의 변화(수면·식습관·놀이 반응 등)를 짧은 주기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함

**Q 상담 지도에 대한 Q&A**

Q1

**보호자가 상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담의 목적이 문제 해결과 영유아 지원임을 설명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문자나 안내장을 통해 상담 필요성을 재안내하고, 보호자가 원할 때 다시 진행합니다.

Q2

**상담 중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감정을 진정시킨 뒤, 추후 일정 재조정이나 원장 입회하에 재상담을 진행합니다.

### 상담 지도에 대한 Q&A

Q3

**상담 후에도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동일 사안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발달·심리·언어치료 등) 연계 또는 훈육 단계로 전환하고, 상담 기록지를 첨부하여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Q4

**상담 내용은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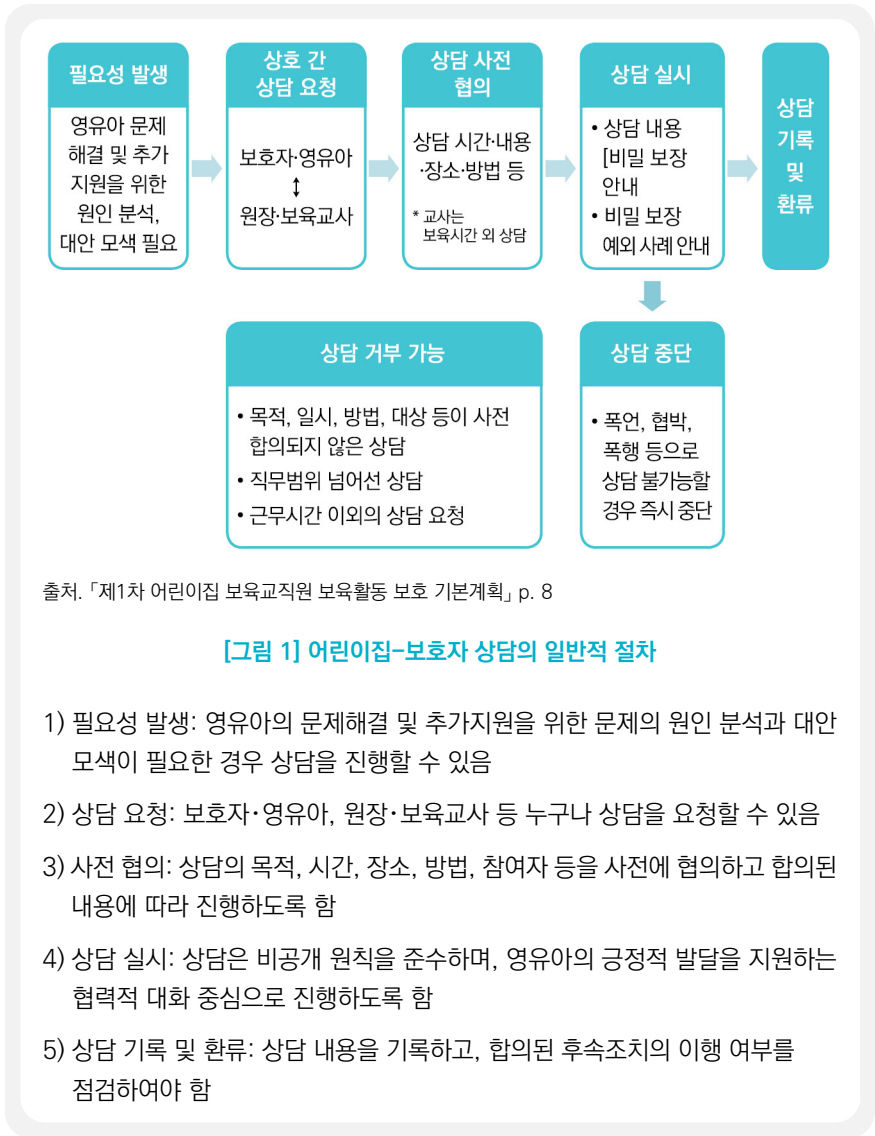
**A**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되, 영유아 안전이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원장·관련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상담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상담 전	상담 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상담이 필요한 사안(행동·정서·발달 등)을 명확히 파악했는가?
	정보 수집 및 협의	<input type="checkbox"/> 관련 교사나 원장과 협의하여 상담 목표를 설정했는가?
	상담 일정 및 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상담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내했는가?
	상담 준비	<input type="checkbox"/> 상담기록지, 관찰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는가?
상담 시	공감적 태도 유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의 감정과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했는가?
	객관적 설명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행동·발달을 관찰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했는가?
	상호 협의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가?
	비밀 유지	<input type="checkbox"/>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했는가?
상담 후	상담 결과 기록	<input type="checkbox"/> 상담 내용을 상담기록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했는가?
	후속 지원	<input type="checkbox"/> 필요 시 전문가 연계 또는 추가 상담 계획을 수립했는가?
	공유 및 보관	<input type="checkbox"/> 상담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 후, 상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했는가?
	보호자 피드백 수집	<input type="checkbox"/> 보호자로부터 상담 후 영유아의 변화를 확인했는가?



**참고: 어린이집 - 보호자 상담 절차 예시**



출처.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p. 8

**[그림 1] 어린이집-보호자 상담의 일반적 절차**

- 1) 필요성 발생: 영유아의 문제해결 및 추가지원을 위한 문제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 2) 상담 요청: 보호자·영유아, 원장·보육교사 등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3) 사전 협의: 상담의 목적, 시간, 장소, 방법, 참여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도록 함
- 4) 상담 실시: 상담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며, 영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하는 협력적 대화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함
- 5) 상담 기록 및 환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합의된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참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상담 가이드라인

### I. 일반 원칙

- **상호 존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는 상담을 진행할 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예의를 지키고, 경어를 사용하여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 **목적 제한:** 상담 내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보육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특히 영아는 영아의 수면 패턴 변화, 섭취량 감소, 배변 문제, 이유식 적응, 분리 불안 등 기본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교육적 목적과 무관한 사적인 질의를 지양합니다.
- **사전협의:** 상담 일시, 장소, 방법 및 참여자 등은 보육교직원과 보호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상담은 상호 협의된 시간과 방법에 따릅니다.
- **시간준수:** 상담은 보육교직원의 근무 시간 중 상호 협의된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보육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활동 보호:** 교사와 보호자는 교사가 보육활동 중인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영아 반의 경우, 수유·수면·기저귀 갈이 등 기본 돌봄 시간이 집중되는 시간대(예: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 등)에는 상담 요청을 자제합니다.
- **비밀보장:**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유아 및 가정 관련 민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 의무나 감염병 신고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 II. 상담 채널별 원칙

### 1. 대면 및 전화 상담 원칙

- **사적 질문 거부:**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사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장소:** 대면 상담은 영유아의 보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 및 비밀 보장 등이 확보된 어린이집 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아반의 경우, 영아가 교사와 분리되면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영아를 교사의 시야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되, 다른 영유아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공식 전화 사용:** 보호자는 전화 상담을 하려는 경우, 어린이집의 전화를 통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보육교직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육교직원의 개인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영아 수면 중, 수유·응급상황(구토, 고열 등) 시에는 교사가 전화를 즉시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어린이집 대표번호나 공용 휴대전화로 회신합니다.

### 2. 문자 및 SNS 상담 원칙

- **공식 채널 활용:** 문자 및 SNS를 이용한 상담은 어린이집 공식 채널을 활용하며, 보육교직원의 개인 연락처 및 SNS를 활용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영아의 수유량, 수면 여부, 배변 여부 등 단순 사실 확인은 알림장·앱 등 공식 전자기록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메신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시간 준수:** 문자 및 SNS 상담은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담이 아닌 단순 사실 확인 등의 정보교환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의 건강·안전과 직접 관련된 긴급 상황(고열, 사고 등)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사실 통보' 수준의 단문 메시지는 허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담과 요구는 근무시간 내에 실시합니다.

- **반복적 연락 금지:**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상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영아의 울음·수면 영상, 집에서 촬영한 잤은 사진·동영상을 반복 전송하며 발달평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발달평가는 정기적인 관찰·기록과 개별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공개 금지:** 상호 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3. 이메일 상담 원칙

- **성실한 답변 노력:**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는 상대의 이메일 메시지에 성실히 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건 명시:** 보호자가 이메일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에는 상담 요청자 및 용건(목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아의 건강·발달 관련 상담 요청 시, 최근 1~2주간의 수유·수면·배변 패턴, 병원 진료 여부 등을 간단히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 **공개 제한:** 상호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상담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이메일에 포함하여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의 얼굴·신체가 명확히 식별되는 사진이나 건강상태·발달 수준이 포함된 메일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영유아의 인권·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III. 상담 거부/중단에 관한 구체적 제한

- 보육교직원은 상호 협의된 상담일지라도, 상담하려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부 또는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담 거부 가능 사유	법적 근거
1. 사전협의 미비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및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고시 제6조제6항제1호
2. 직무 범위 외 요구	보육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예: 다른 영유아에 대한 민감 정보 요청, 교사의 사생활 관련 질의 등)	고시 제6조제6항제2호
3. 근무시간 외 요구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고시 제6조제6항제3호
4. 폭언 및 폭행	보호자 등의 폭언, 욕설, 협박, 폭행 등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 제6조제6항제4호
5. 반복적 민원	보육교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 요구하는 경우	고시 제6조제6항제4호
6. 위협 행위	보육교직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고시 제6조제7항
7. 상태 불안정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이거나,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	고시 제6조제7항

※ 위 사유 중 특히 폭언, 협박, 폭행(4호), 위협(7호), 상태 불안정(7호) 등으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3

## 주의

## 관련 조문

##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제4호

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제7조(주의)

-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이 어린이집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영유아의 행동으로 보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는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 정의

- '주의' 지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거나 다른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언어나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문제행동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경고하여 안내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주의’ 지도의 목적은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음

### ☑ 주의 지도 방법 및 실시

- 주의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경고하는 지도 행위로, 영유아의 반복적이거나 즉각적인 행동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간결하고 단호하되, 비난이 아닌 안내의 어조로 전달하도록 함
- 주의를 주기 전, 행동의 원인(피로·불안·주의 부족 등)을 먼저 파악하도록 함
- 주의는 공개보다 개별적으로 전달하며, 타 영유아 앞에서 부정적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함
-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주의 내용과 횟수를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함
- 주의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훈육·훈계 단계로 전환하여 생활지도 할 수 있으며, 상담 또는 조연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주의 지도의 현장 적용 예시

#### 사례 1

식사 중 손가락을 던지는 영아에 대한 주의 지도

- 상황 : 1세 영아가 손가락을 던지며 식사를 거부함
- 주의 지도 : 교사는 즉시 시선을 맞추며 “○○야, 밥손가락은 던지는 게 아니야. 던지면 위험해요.”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하고, 식탁 위를 정리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가 식사 중 던지는 행동을 보여 잠시 주의를 주었어요. 가정에서도 식사 도중 던지지 않도록 함께 지도해 주세요.”라고 안내하도록 함

## 사례 2

### ▶ 때때 놀잇감을 빼앗는 유아에 대한 주의 지도

- 상황 : 4세 유아가 놀이 중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으며 다툼 발생함
- 주의 지도 : 교사는 “○○야, 친구의 물건을 빼앗으면 친구 마음이 속상해요. 같이 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주의를 주며 행동의 이유를 확인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가 장난감을 빼앗는 행동을 보여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양보하는 연습을 함께 지도해 주세요.”라고 안내하도록 함

## ☑ 주의 지도 시 유의사항

- 주의는 훈육의 전 단계로, 교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난의 어조로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공개적 질책보다는 개별 지도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주의는 반드시 즉시적이고 구체적 행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예. “하지 마”보다는 “○○하면 위험해요”와 같이 표현)
- 동일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주의 내용을 누적 기록하여 후속 상담이나 훈육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
- 동일한 사안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활지도 방식을 상위 단계(상담, 훈육·훈계 등)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아 적용 시 유의사항**

-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졸림, 피로, 불안 등)를 먼저 확인하고, 행동의 원인이 단순한 부주의인지, 불편감이나 욕구 표현인지 판단한 후 주의를 줌
- 영아는 언어 이해력이 제한적이므로, '왜'보다 '어떻게'에 초점을 맞춰 즉각적이고 단순한 말로 주의를 전달하여야 함 (예: “하지 마!”보다는 “뜨거워요, 손은 뒤로 해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
- 비언어적 신호(표정, 몸짓, 손짓 등)를 함께 사용하여 교사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언어보다 교사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주의 후에는 안아주기, 시선 맞추기 등의 행동을 통해, 주의가 불안이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함
- 동일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주의 내용과 횟수를 간략히 기록하여, 영아의 발달 특성과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 상담 또는 훈육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

**주의 지도에 대한 Q&A**

Q1

**영유아가 주의를 무시하고 계속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훈육 단계로 전환하기보다,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조언 또는 상담을 병행합니다. 필요 시 보호자와 상의합니다.

Q2

**여러 아이들 앞에서 주의를 줘도 되나요?**

**A** 공개적 주의를 자존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용히 개별적으로 지도합니다.

Q3

**주의를 여러 번 줘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생활지도일지에 기록 후, 원장과 상의하여 상담 또는 훈육 단계로 전환합니다.

## ☑ 주의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주의 전	상황 관찰 및 판단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행동이나 문제 상황을 충분히 관찰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는지, 일시적 상황인지 구분했는가?
	객관적 협의	<input type="checkbox"/> 동료 교사나 원장과 협의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주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다른 생활지도 방법(조언·상담 등)이 더 적절한지 검토했는가?
	목표 및 내용 설정	<input type="checkbox"/> 주의의 목적(안전 확보, 규칙 인식 등)을 명확히 설정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주의 시 사용할 언어 표현과 방식(말투, 거리, 시선)을 사전에 점검했는가?
주의 시	언어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감정적 반응이 아닌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전달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언어(“하지 마”) 대신 구체적 행동 중심 언어(“○○하면 위험해요”)를 사용했는가?
	개별지도 실시	<input type="checkbox"/> 공개적 질책이 아닌 개별 지도로 진행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주변 영유아가 불안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용히 정리했는가?
	대안 제시	<input type="checkbox"/> 주의 후 대안 행동이나 올바른 방법을 함께 제시했는가?
	영유아 이해 확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주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눈맞춤·언어 반응 등을 통해 확인했는가?
주의 후	관찰 및 기록	<input type="checkbox"/> 주의 후 영유아의 정서 상태와 행동 변화를 관찰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행동의 재발 여부를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했는가?
	보호자 안내 및 공유	<input type="checkbox"/> 필요 시 보호자에게 사실 중심으로 상황을 안내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에게 가정 내 연계지도 방안을 간단히 제시했는가?
	후속 연계 계획	<input type="checkbox"/> 반복 사례는 원장 또는 동료 교사와 논의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가?
	보호자 피드백 수집	<input type="checkbox"/> 보호자로부터 상담 후 영유아의 변화를 확인했는가?

## 4

## 훈육·훈계

## 관련 조문

##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제4호

라. "훈육·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제8조(훈육·훈계)

-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제5조에 따른 조건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훈계할 수 있다.
-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영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교사가 반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품
  4.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⑥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 ☑ 정의

- ‘훈육·훈계’ 지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반복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행위로 처벌과 구별됨
- ‘훈육·훈계’ 지도의 목적은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돕는 것에 있음

## 가. 지시

### ☑ 정의

- ‘지시’ 지도란 교사가 영유아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이나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올바른 행동 방향을 안내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 지시 지도 방법 및 실시

- 지시는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이나, 발생 직후 초기 단계에서 활용되며, 규칙·약속·순서 등의 행동 기준을 알려주는 예방적 지도 방식임
- 지시를 할 때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언어 이해력,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함
-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지시하기보다는 한 문장에 한 행동만 포함시켜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시를 한 후에는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모범 행동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모델링)이 효과적임
- 영유아가 지시를 따랐을 때는 즉시 칭찬, 미소, 가벼운 스킨십 등으로 강화하며, ‘지시→이행→칭찬’의 순환 경험을 통해 긍정적 행동을 내면화하도록 함

- 지시의 내용은 긍정적인 표현(“이렇게 하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부정적 명령(“하지 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함

### ☑ 지시 지도의 현장 적용 예시

#### 사례 1

식사 중 컵을 기울이며 물을 쏟는 영아에 대한 지시 지도

- 상황 : 1세 영아가 식사 시간에 컵을 반복적으로 기울이며 물을 쏟음
- 지시 지도 : 교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야, 컵은 이렇게 세워서 마셔요.”라며 실제로 컵을 세워 보여주고, 손을 함께 잡아 동작을 시범으로 안내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가 물을 자주 쏟아서 ‘컵을 세워 마시기’를 시범으로 보여주었어요. 가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해 주세요.”라고 공유하도록 함

#### 사례 2

놀이 후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지시 지도

- 상황 : 4세 유아가 자유놀이 후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이동함
- 지시 지도 : 교사는 “○○야,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바구니에 넣어요. 그리고 새 놀이를 시작하자.”라고 분명히 지시한 뒤, 함께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오늘 ○○가 놀이 후 정리 순서를 배웠어요. 집에서도 놀이 후 정리하도록 함께 연습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전달하도록 함

### ☑ 지시 지도 시 유의사항

- 지시는 명령이 아닌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말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예. “정리해요”보다는 “우리 함께 장난감 넣어요”)
- 감정적인 억양(예. “지금 당장 해!”)이 아닌, 차분하고 일관된 어조로 전달하도록 함
- 영유아가 즉시 따르지 못하더라도 재촉하기보다 충분한 시간과 모델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자료(예 사진, 그림, 손짓 등)를 활용해 행동을 구체화하도록 함
- 지시가 반복적으로 무시될 경우, 행동의 원인(주의 집중력, 감정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제지 단계로 전환하도록 함
- 여러 명에게 동시에 지시할 때는 개별 눈맞춤과 이름 호명을 통해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함

### 영아 적용 시 유의사항

- 영아는 ‘규칙’보다 ‘흐름’을 통해 배우게 되므로,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일과의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안내하여야 함(예. “정리할 시간이야.”보다는 “이제 블록을 상자에 넣고 노래해요.”처럼 활동 전환 중심으로 제시)
- 영아는 언어적 지시보다 교사의 행동 모델링을 통해 이해하므로, 지시 후 교사가 직접 행동을 시범 보이며 따라하도록 함
- 지시를 짧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제시하도록 함(예. “이제 손 씻어요.”)



### 지시 지도에 대한 Q&A

Q1

**영유아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제재하기보다, 먼저 지시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반복하고, 행동을 함께 시범 보이며 유도합니다. 이해 부족이 반복되면 제지 단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2

**지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A** 지시가 2~3회 이상 반복되어도 효과가 없다면 단순 지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이유 설명→선택 제시→제지’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집단 활동 중 일부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A** 전체 앞에서 꾸짖기보다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상황을 이해시키고, 필요 시 활동 구조나 지시 방법(시각자료, 역할 분담 등)을 조정합니다.

**☑ 지시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지시 전	지시 목적 설정	<input type="checkbox"/> 지시의 목적(안전 확보, 참여 유도, 일과 안내 등)을 명확히 설정했는가?
	지시 불이행 원인 파악	<input type="checkbox"/> 지시 불이행의 원인(주의 산만, 피로, 낯설음 등)을 사전에 파악했는가?
	지시 표현 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시할 내용과 언어 표현을 미리 구체화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짧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전달할 계획을 세웠는가?
지시 시	언어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명령이 아닌 안내의 어조로 지시했는가? <input type="checkbox"/> 교사의 표정·시선·몸짓 등 비언어적 신호를 활용했는가?
	시범 및 모델링 제공	<input type="checkbox"/> 말로만 지시하지 않고, 행동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교사의 시범을 충분히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는가?
	영유아 이해 확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지시 내용을 이해했는지 표정·행동으로 확인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시에 따르지 못한 영유아에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며 다시 안내했는가?
지시 후	피드백 및 강화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지시를 이행했을 때 즉시 긍정적 피드백(예. 미소, 칭찬 등)을 제공했는가?
	보호자 안내 및 공유	<input type="checkbox"/> 필요 시 보호자에게 사실 중심으로 상황을 안내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에게 가정 내 연계지도 방안을 간단히 제시했는가?
	후속 연계 계획	<input type="checkbox"/> 동일 상황이 반복될 경우, 원장 또는 동료 교사와 협의하여 지도 방향을 점검했는가?

**나. 제지**

**☑ 정의**

- ‘제지’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신호 또는 신체적 개입(안전 범위 내)을 통해 행동을 멈추게 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 제지 지도 방법 및 실시

- 제지는 지시 이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시하도록 함
- 제지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안전 확보와 행동 조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제지 시에는 우선 ‘멈춰요’, ‘위험해요’와 같이 짧고 단호한 언어로 즉시 중단을 요청하는 언어적 제지를 우선 실시함. 다만, 영유아 스스로 통제가 어렵거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유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거나 행동을 일시적으로 막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적 제지를 실시하도록 함. 이때, 물리적 제지는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제지 이후에는 반드시 행동의 이유와 바람직한 대안을 함께 안내함
- 제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영유아의 행동 원인 분석 및 발달 상황을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보호자 상담을 병행하여 개별화된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문가관 연계를 모색함

## ☑ 제지 지도의 현장 적용 예시

### 사례 1

친구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영아에 대한 제지 지도

- 상황 : 2세 영아가 친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김
- 제지 지도 : 교사는 즉시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야, 친구 머리를 잡으면 아파요. 손은 이렇게 내려놓아요.”라고 말하고 손을 천천히 놓게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가 친구 머리를 잡는 행동을 보였어요. 즉시 손을 잡아 멈추게 하고 ‘손은 도와주는 손이에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지도해 주세요.”라고 전달하도록 함

## 사례 2

### 놀이 중 블록을 친구에게 던지는 유아에 대한 제지 지도

- 상황 : 5세 유아가 자유놀이 중 블록을 친구에게 던짐
- 제지 지도 : 교사는 즉시 “○○야, 멈춰요! 던지면 다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블록을 손에서 치우고, 아이를 안전한 거리로 이동시킨 후 “화난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자.”라고 안내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오늘 ○○가 블록을 던져 친구가 놀랐어요. 던지는 행동을 멈추게 한 뒤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왔습니다.”라고 전달하도록 함

## ☑ 제지 지도 시 유의사항

- 제지는 영유아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함
- 교사는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되, 신체 접촉은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함
- 제지는 감정적 반응(고함, 격한 제스처) 없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실시하도록 함
- 제지 후에는 반드시 행동의 이유를 함께 탐색하여 영유아가 “왜 멈춰야 했는지”를 이해하도록 지원함
- 동일한 행동에 대한 제지가 반복될 경우, 영유아의 주의집중 부족이나 정서 불안 등 근본 원인을 탐색하여 지도 방향을 조정하도록 함
- 위험 행동 제지 시 다른 영유아에게 불안감이 전달되지 않도록, 상황이 종료된 후 전체에게 간단히 설명함(예. 제지 상황이 끝난 뒤, 다른 영유아에게 “○○가 다칠 뻔해서 선생님이 잠깐 멈추자고 했어요.”와 같이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짧게 알려줌)

### 영아 적용 시 유의사항

- 영아는 언어보다 즉각적 행동 신호를 먼저 이해하므로, 제지는 짧고 단호한 어조로 전달하고, 즉시 위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신체적 개입(예. 손잡기, 시선 맞추기 등)을 병행함
- 제지 시 교사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크게 소리치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영아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유의함(예. “안 돼!” 보다는 “멈추자” “손은 뒤로 해요.”와 같이 부드럽고 일관된 어조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아가 놀라거나 울음을 보일 경우, 즉시 신체 접촉(예. 안아주기, 손잡기 등)과 부드러운 언어 표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도록 함
- 제지 후에는 간단한 언어로 ‘멈춤의 이유’를 설명하여, 영아가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경험을 하도록 지원함 (예. “뜨거워서 다칠 뻔 했어요.” “친구가 아플 수 있어요.” 등)



### 제지 지도에 대한 Q&A

Q1

**제지 시 신체 접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손을 잡거나 팔을 가볍게 막는 정도의 최소 개입이 가능합니다. 강압적 신체 통제나 밀기, 잡아끌기는 금지됩니다.

Q2

**제지 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A** 큰 소리는 일시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호하고 낮은 톤으로 짧게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Q3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 아이가 동시에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어떻게 제지해야 하나요?**

**A**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즉각적 위험(신체적 사고)부터 제지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개별적으로 지도합니다.

**☑ 제지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제지 전	위험 상황 인식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즉시 인식했는가?
	제지 목적 설정	<input type="checkbox"/> 제지의 목적(안전 확보, 감정 안정, 행동 조절 등)을 명확히 인식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지가 처벌의 성격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의했는가?
	환경 정비 준비	<input type="checkbox"/> 위험 요소(장난감, 도구, 가구 등)를 신속히 제거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지 시 다른 영유아에게 불안이 전이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했는가?
제지 시	언어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감정적 반응(고함, 격한 제스처 등) 없이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제시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짧고 명확한 언어("멈추자", "손은 뒤로 해요")로 전달했는가?
	신체적 개입 및 안전 확보	<input type="checkbox"/>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면서도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즉시적인 제지(손잡기, 시선 맞추기 등)가 필요한 경우 적절히 개입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지 후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는가?
	영유아 이해 촉진 및 정서 안정	<input type="checkbox"/> 제지 후 "왜 멈춰야 했는지"를 간단히 설명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놀라거나 울음을 보일 경우 즉시 정서적 안정을 지원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영유아에게 불안감이 전이되지 않도록 상황 종료 후 간단히 설명했는가?
제지 후	행동 원인 탐색	<input type="checkbox"/> 반복되는 제지의 경우, 주의집중 부족이나 정서 불안 등 근본 원인을 탐색했는가?
	기록 및 공유	<input type="checkbox"/> 제지 상황과 교사의 대응 내용을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했는가? <input type="checkbox"/> 필요 시 원장이나 보호자에게 사실 중심으로 상황을 공유했는가?
	후속 지도 계획	<input type="checkbox"/> 제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 조정이나 예방 지도를 계획했는가?

## 다. 물품 분리보관

### ☑ 정의

- '물품 분리보관'이란 교사가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놀잇감이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다른 영유아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교사가 이를 일시적으로 분리·보관하여 상황을 안정시키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 물품 분리보관 지도 방법 및 실시

- 물품 분리보관은 처벌이 아닌 '상황 조절을 위한 안전 조치'이며, 영유아에게 부정적 감정을 주지 않도록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물품 분리보관 지도 시, 물건 자체가 아닌 행동의 부적절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야 함(예: 이 장난감이 위험해서 잠시 치워둘게요)
- 일정 시간 후 행동 조절이 확인되면 즉시 반환하여, 분리보관이 '벌'이 아닌 '안전 학습의 기회'임을 이해하도록 지원함
- 반복되는 경우에는 행동 원인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상담이나 환경 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 물품 분리보관 지도의 현장 적용 예시

#### 사례 1

블록을 입에 넣는 영아에 대한 물품 분리보관 지도

- 상황 : 2세 영아가 블록을 입에 물거나 넣음
- 물품 분리보관 지도 : 교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야, 블록은 입에 넣으면 안 돼요. 이건 위험하니까 잠깐 선생님이 보관할게요."라고 말하며 블록을 치우고, 안전한 놀잇감(예. 인형, 부드러운 블록)으로 대체하도록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가 블록을 입에 넣는 행동을 보여 잠시 보관했어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 다른 놀잇감으로 전환했습니다."라고 사실 중심으로 공유함

## 사례 2

### 놀이 중 친구에게 교구를 던지는 유아에 대한 물품 분리보관 지도

- 상황 : 5세 유아가 놀이 중 친구와 다투며 교구를 세계 던짐
- 물품 분리보관 지도 : 교사는 “○○야, 던지면 다칠 수 있어서 이 교구는 잠시 치워둘게요. 네가 진정되면 다시 쓸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놀이 공간을 정리한 뒤 친구에게 사과하도록 유도하도록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오늘 ○○가 교구를 던지는 행동을 보여 일시적으로 교구를 보관했습니다. 진정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라고 전달하도록 함

## ☑ 물품 분리보관 지도 시 유의사항

- 물품 분리보관은 처벌이 아닌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건을 치울 때는 ‘안 돼요!’ 대신 “이건 위험하니까 선생님이 잠깐 치워둘게요.”와 같이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어조로 설명하도록 함
- 영유아에게 “물건을 빼앗는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덧붙이도록 함
- 분리보관 전, 행동의 원인(피로, 좌절, 경쟁심, 주의 요구 등)을 파악하고 감정적 개입을 피하도록 함
- 교사는 물건을 치울 때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어조로 말하고, 분리 시간을 최소화함
- 동일 상황이 반복될 경우,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관계적 요인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개별 상담이나 환경 조정을 통해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분리보관 후 영유아의 감정이 안정되면 즉시 재사용 기회를 제공하여 회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영아 적용 시 유의사항

- 영아는 ‘물건을 빼앗긴다’고 느끼기 쉬우므로, 분리보관의 이유를 간단히 언어로 덧붙이도록 함(예. “○○가 입에 넣으면 아파요. 선생님이 잠깐 보관할게요.”). 이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나중에 다시 쓰자.”)를 함께 전해 박탈감이나 불안을 최소화함
- 영아의 정서적 반응(예. 놀람, 울음, 저항 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안정시키도록 함. 예를 들어 신체 접촉(안아주기, 손잡기), 시선 맞추기, 부드러운 말투를 통해 ‘물건을 치운다’보다 ‘함께 안전을 지킨다’는 경험으로 연계함
- 위험한 교구를 치운 뒤에는 부드러운 교구나 손 놀이, 감각놀이 등으로 전환하여 영아가 흥미를 잃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놀이를 이어가도록 함
- 영아는 분리보관 상황이 길어지면 불안감·집착·울음 등으로 반응하므로, 상황이 안정되면 즉시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제지 지도에 대한 Q&A

Q1

**영유아가 물품 분리보관을 체벌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체벌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지만, 물품 분리보관은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적 조치입니다. 다만, 설명 없이 물건을 빼앗는 것은 부적절한 지도입니다.

Q2

**물품 분리보관 시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A** 영유아의 연령, 발달, 정서 상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시행하며, 영유아의 정서 및 행동 안정이 확인되면 즉시 반환하도록 합니다.

Q3

**아이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울거나 떼를 쓰면 어떻게 하나요?**

**A** 선생님이 “○○가 던지지 않으면 다시 줄 거예요.”라고 말하며, 행동의 조건을 명확히 알려주고 진정 후 바로 반환합니다.

**☑ 물품 분리보관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분리보관 전	위험 상황 및 필요성 판단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부적절한 상황이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물품 분리보관이 필요한 상황인지(안전 확보, 행동 중재 등) 판단했는가?
	행동 원인 파악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행동 원인(피로, 좌절, 경쟁심, 주의 요구 등)을 사전에 파악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물품 분리보관을 실시했는가?
분리보관 시	언어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표현(예. 하지마, 안 돼)보다 안전 확보 중심의 이유(예. 그건 위험해요. 다칠 수 있어요 등)로 설명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물건을 치울 때 차분한 어조로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는가?
	신체적 개입 및 시간 조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에게서 물건을 억지로 빼앗지 않고, 말로 설명하거나 스스로 내려놓도록 유도했나요?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물품보관 시간을 최소한으로 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분리 후 대체 놀이(안전한 교구, 감각놀이 등)를 제시했는가?
	정서 안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울거나 저항할 경우, 안아주기·손잡기 등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왔는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영유아에게 불안감이 전이되지 않도록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는가?
분리보관 후	행동 이해 및 재사용 안내	<input type="checkbox"/> 분리 후 영유아에게 다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안내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재사용 시 행동의 이유와 안전한 사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했는가?
	기록 및 공유	<input type="checkbox"/> 분리보관 상황을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했는가? <input type="checkbox"/> 필요 시 보호자에게 사실 중심으로 상황을 안내했는가?
	후속 지도 계획	<input type="checkbox"/> 동일 행동이 반복될 경우, 행동의 원인을 재점검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담이나 환경 조정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가?

## 라. 귀가조치

### 관련 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공동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 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 [영유아보육법]

-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 ☑ 정의

- ‘귀가조치’란 영유아의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원장 또는 교사가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 귀가조치의 방법 및 실시

- 귀가조치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발열, 구토, 발진 등)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증상과 귀가 사유를 차분한 어조로 설명하도록 함
- 귀가 전에는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안아주기, 시선 맞추기 등)을 먼저 돕도록 함
- 귀가 요청 후 보호자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독립된 장소를 마련하여 영유아가 귀가하기 전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독립된 장소일 경우, 보육교직원의 시야에 영유아가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함
- 발병 시각, 증상, 보호자 연락 시간, 귀가 시간 등을 보육일지 또는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 귀가 후 재등원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보호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등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 귀가조치 지도의 현장 적용 예시

### 사례 1

낮잠 중 열감을 보이고 보채는 영아에 대한 귀가조치 지도

- 상황 : 1세 영아가 낮잠 도중 이마에 열이 나고 보채며 울음을 반복함
- 귀가조치 지도 : 교사는 영아의 체온을 확인한 뒤,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며 “○○야, 조금 뜨겁네. 선생님이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울음을 진정시킴. 이후 보호자에게 현재 체온, 발열 시각, 행동 변화 등을 차분히 설명하고 귀가를 요청하도록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가 낮잠 중에 열이 나고 보채는 모습을 보여서 연락드렸어요. 체온이 38도 정도로 올라서 병원에서 한 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푹 쉬고 회복하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하도록 함

## 사례 2

### 활동 중 열감과 기침 증세를 보이는 유아에 대한 귀가조치 지도

- 상황 : 3세 유아가 오전 활동 중 열감과 기침 증세를 보임
- 귀가조치 지도 : 교사는 유아에게 “○○야, 지금은 몸이 조금 뜨거워서 조금 쉬도록 하자. 엄마한테도 이야기할게요.”라고 말하며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을 돕도록 함.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발열 시간, 체온, 증상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귀가를 요청하여야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어머님께 연락드린 후에도 체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서 병원 진료를 권해 드립니다. 진료 후 아이가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전달하도록 함

## ☑ 귀가조치 지도 시 유의사항

- 귀가조치는 처벌이나 배제가 아닌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생활지도임을 교사와 보호자 모두 인식해야 함
- 다른 영유아나 학부모에게 질병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함
- 법정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원장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추가 조치(검사·신고 등)를 병행하도록 함
- 귀가 시 보호자에게는 “○○가 열이 조금 나서 집에서 푹 쉬면 좋을 것 같아요.”처럼 비난이나 책임의 뉘앙스가 없는 긍정적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귀가 후 가정과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회복 상태(수면, 식사, 기분 등)를 등원 시 공유하여, 돌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영아 적용 시 유의사항**

- 영아는 증상 표현이 언어보다 행동으로 나타나므로, 평소와 다른 울음, 식사 거부, 무기력, 얼굴 홍조 등 미세한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단순 피로나 분리불안 등 일시적 반응과 구분하여 신중히 판단하도록 함
- 귀가 전까지는 교사의 품에 안기거나, 손잡기·시선 맞추기 등 신체적 안정감 제공을 우선으로 함. 영아가 울음을 지속할 경우 억제하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 정서적 긴장을 완화 시키도록 함
- 분리공간에서 대기할 때는 익숙한 담요, 인형, 교사의 목소리 등 정서적 안정 단서를 제공해 불안을 완화 시키도록 함
- 영아의 경우, 보호자 보고에 의존하므로 등원 시 세심히 관찰하고 보호자에게 상태를 재확인하도록 함

**Q 귀가조치 지도에 대한 Q&A**

Q1

**보호자가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가 조치 요청은 영유아 본인 및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먼저 설명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와 보육사업 안내의 감염병 확산 방지 지침에 따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협조가 어렵거나 거부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 후 관할 보건소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Q2

**가정에서 치료가 어려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안내해 보호자가 필요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 아동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돌봐주는 서비스  
(이용문의 1577-2514, <http://idolbom.go.kr>)

Q3

**귀가조치 후 재등원은 언제 가능한가요?**

**A** 감염 우려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보호자 확인서 제출 후 가능합니다.

## ☑ 귀가조치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귀가조치 전	귀가조치 전 판단	<input type="checkbox"/> 발열, 구토, 발진 등 감염 의심 증상이나 급격한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귀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장(또는 보건담당 교사)과 협의하여 귀가조치 필요성을 판단했는가?
귀가조치 시	보호자 안내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에게 증상 관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귀가 필요성을 차분하고 공감적으로 설명했는가?
	영유아 보호	<input type="checkbox"/> 보건위생상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귀가 전까지 교사의 시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아동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을 도왔는가?
귀가조치 후	기록 관리	<input type="checkbox"/> 귀가조치와 관련된 모든 상황(증상 발생 시간, 보호자 통보 내용, 귀가 시각 등)을 보육일지 또는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등원 시 의사 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는가?
	상황 공유	<input type="checkbox"/> 귀가조치 후 원장 또는 보건담당 교사와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한 조치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는가?

## 5

## 보상

## 관련 조문

##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제4호

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보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 정의

- '보상' 지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노력, 성취를 인식하고 칭찬, 격려, 기회 제공 등 긍정적 강화 방법을 통해 원하는 행동을 지속하도록 돕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보상' 지도의 목적은 영유아가 칭찬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그 경험을 통해 내적 동기(스스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 보상 지도 방법 및 실시

- 보상은 영유아의 자존감 향상과 자기 효능감 형성으로 이어져야 하며, 바람직한 행동의 내면화를 목표로 함
- 보상의 목적은 외적 동기(칭찬·스티커 등)에서 내적 동기(성취·기쁨)로의 전환임을 인식하고, 점차 자기조절과 자기 인정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보상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효과적임(예: "잘했어요."보다 "○○가 친구에게 양보해서 선생님이 기뻐요.")

- 물질적 보상(스티커, 선물 등)보다는 사회적 보상(칭찬, 인정, 신뢰 표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함
- 보상의 기준은 교사의 주관이 아닌 행동의 의미·노력·과정에 두어야 하며, 결과 중심의 보상은 경쟁과 비교를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함
- 개인 보상과 집단 보상을 병행하되, 개인의 성취를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반복적 행동 변화가 있을 때는 일회성 칭찬보다 점진적 강화(과정-유지-내면화)가 필요함

## ☑ 보상 지도의 현장 적용 예시

### 사례 1

#### 혼자 신발을 신은 영아에 대한 보상 지도

- 상황 : 2세 영아가 스스로 신발을 신으며 도움을 요청함
- 보상 지도 : 교사는 “○○가 혼자 신발을 신었구나! 선생님이 아주 자랑스러워요.”라며 미소로 칭찬하고, 신발장 옆 ‘오늘 내가 한 일’ 게시판에 스티커를 함께 붙이게 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가 오늘 혼자 신발을 신었어요. 스스로 해보려는 모습이 참 예뻐합니다.”라고 공유함

### 사례 2

#### 친구에게 사과한 유아에 대한 보상 지도

- 상황 : 5세 유아가 놀이 중 친구와 다툰 후, 스스로 사과하고 함께 놀이를 재개함
- 보상 지도 : 교사는 “○○야, 스스로 사과했구나. 그 용기가 정말 멋지다.”라며 즉시 인정하고, ‘친구를 배려한 행동’ 칭찬 카드를 함께 보관함
- 보호자 연계 지도 : 귀가 시, “○○가 친구와의 다툼 상황에서 스스로 사과했어요. 감정 조절이 잘 되었어요.”라고 내용을 공유함

## ☑ 보상 지도 시 유의사항

- 보상은 행동의 의미를 인식시키는 도구이지, 물질적 보상이나 경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함
- 비교나 차별적 보상(예. “○○는 했는데 너는 안 했지?”)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함
- 보상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즉흥적이거나 감정적 보상은 지양하여야 함
- 영유아의 모든 행동을 칭찬하기보다, 의미 있는 행동 변화나 시도에만 제공하여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함
- 칭찬은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하고, 노력과 태도 중심으로 표현하도록 함. 또한 칭찬의 빈도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므로,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함

### 영아 적용 시 유의사항

- 영아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보상과 행동의 연관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행동 직후 즉각적으로 미소, 박수, 안아주기, 칭찬 등의 따뜻한 반응을 제공하도록 함
- 영아는 칭찬의 내용보다 음성과 표정의 정서 신호를 더 민감하게 해석하므로, 밝고 안정적인 어조로 단순한 언어를 반복해 표현함(예: “좋아요! 선생님이 너무 기뻐요.” 등 짧고 긍정적인 언어로 반복 강화)
- 영아는 기본 욕구(불안·피로·배고픔 등)가 충족된 상태에서 보상지도가 이루어질 때 긍정적 강화 효과가 높으므로, 지도 전 영아의 정서 상태를 점검하도록 함



## 보상 지도에 대한 Q&A

Q1

**스티커나 간식도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물질적 보상은 일시적 동기유발에 그치므로 습관 형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보상(칭찬, 관심, 역할 부여 등)을 우선하고, 물질적 보상은 보조적으로 활용합니다.

Q2

**칭찬을 자주 하면 오히려 버릇이 나빠진다는 말이 있던데요?**

**A** 무조건적인 칭찬은 한계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과정 중심의 칭찬은 긍정적 자기 인식과 책임감을 길러줍니다.

Q3

**모든 행동에 보상을 주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상은 ‘습관화되어야 할 행동’이나 ‘노력의 의미가 큰 행동’에 한정합니다. 일상적인 행동(정리, 인사 등)은 점차 자연스러운 생활습관으로 전환되도록 지도합니다.

Q4

**집단 활동 중 특정 아동을 칭찬해도 될까요?**

**A** 집단 내에서는 공동 성취 중심 보상(“우리 반 모두가 친구를 도와줬어요”)을 병행하고, 개인 칭찬은 개별 상황에서 조용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상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보상 전	보상 목적 설정	<input type="checkbox"/> 보상의 목적(행동 강화, 자존감 향상 등)을 명확히 설정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보상 대상 행동이 생활지도 목표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는가?
	보상 방법 계획	<input type="checkbox"/> 보상 방법(언어, 역할 부여, 스티커 등)이 발달 수준에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물질적 보상보다 사회적 보상을 우선하도록 계획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보상이 경쟁심이나 비교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했는가?
	보상 기준 공유	<input type="checkbox"/> 보상 기준을 원장 또는 동료 교사와 협의했는가? <input type="checkbox"/> 필요 시 보호자에게 보상 운영의 원칙과 취지를 안내했는가?
보상 시	즉시성 및 구체성 확보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행동 직후 즉시 보상을 제공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보상의 이유를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하여 설명했는가? (예: “친구를 도와줘서 고마워.”)
	보상 유형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보상(칭찬, 역할 부여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보상이 영유아의 자발적 동기와 성취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
	영유아 반응 확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보상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는가?
보상 후	행동 변화 관찰	<input type="checkbox"/> 보상 후 영유아의 행동 변화(지속성, 자발성 등)를 관찰했는가?
	기록 및 공유	<input type="checkbox"/> 보상 내용을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동일 행동의 강화 시점과 방식을 교사 간에 공유하여 지도 일관성을 유지했는가?
	후속 지도 계획	<input type="checkbox"/> 외적 보상 경험이 내적 동기로 확장될 수 있도록 후속 지도를 계획했는가?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그 밖의 사항

● 1.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74
● 2.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79
● 3. 이의제기	81
● 4. 기타(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임 사항)	83
● 5. 재검토 기한	85

## 01

##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 관련 조문

## • 제10조(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 취약보육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을 말하며, 일반 영유아보다 발달 수준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생활지도가 필요한 대상을 의미함
- 이 고시 제10조는 이러한 취약보육 대상에 대해 원장과 교사에게 특별히 노력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담당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취약보육 영유아는 발달 수준, 장애 특성,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보육환경 적응 속도나 상호작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 편성 시 연령만을 기준으로 구성하기 보다, 영유아의 발달단계, 의사소통 능력, 돌봄의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가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아동의 발달 특성,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함께 결정하며, 가정과 일관성 있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함

### ☑ '취약보육 영유아' 생활지도 현장 적용 방안

#### 영유아 생활지도 원칙과 방법

-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쉬운 말·그림·사진 등을 활용해 생활지도를 함
- 시각·청각·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지도 방법을 적용함
- 장애·언어·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한 차별적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함
- 원장과 교사는 특수교사·통합보육전문가 등 외부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영유아의 행동 이해와 지도 전략을 마련함
- 생활지도 방식은 일반 영유아에 비해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반응에 따라 자주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함
- 개별 맞춤형 생활습관 지도, 또래 관계 형성지원, 언어 및 정서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 운영 및 협력체계

- 취약보육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수, 연령, 발달수준, 장애정도,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교사 배치와 운영방식을 조정할 수 있음
- 장애아나 다문화 아동이 포함된 반의 경우 특수교사 또는 통역지원 인력,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여 상호 협력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기적 교사회의(예: 월 1회)를 통해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개선내용을 교사 간에 함께 이야기하고 조정함

###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

- 취약보육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대상(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적합한 생활지도 방법과 상호작용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수와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

#### ● 연수의 내용 예시

- 영아 보육 : 발달단계 이해, 기본생활습관 지도, 애착형성과 정서적 안정 지원 등
- 장애아 보육 : 장애 유형별 행동 특성,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 긍정적 행동 지원(PBS), 특수교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 다문화 보육 : 다언어·다문화 감수성 향상, 문화적 편견 예방, 보호자와의 소통 및 다문화 이해

#### ● 연수 운영 방법

- 법정 보수교육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관련 직무교육 및 특별직무교육을 우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연수 :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 보육 지원 교육을 포함한 정기연수 참여를 지원
- 자체연수 :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 회의나 사례공유회를 활용하여 생활지도 사례 분석, 문제해결 워크숍, 전문가 초빙 특강을 실시
- 개별 자문 : 특수교사, 언어·행동치료 전문가 등 외부 인력을 초빙하여 개별 자문 및 현장 컨설팅을 운영

### 보호자와의 협력 및 지도

- 취약보육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 지도가 아닌 보호자와 상호 협의에 기반한 개별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입소 초기에 보호자와 담임교사, 특수교사, 원장이 함께 생활지도 계획을 협의하고 영유아의 특성과 지원 방향을 함께 의논함
- 교사는 가정에서도 적용 가능한 생활지도 팁을 제공하고,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지도가 가정과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협의 시 주요 내용
  - 영유아의 발달 및 행동 특성
  - 생활지도 시 유의점(감각에 예민한 영유아 고려, 의사표현 방법 등)
  - 교사·보호자 간 일상적 소통 방법(알림장, 앱, 대면 등)
  - 생활지도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지도 원칙
- 보호자 협의 내용은 간단히 기록하여 양측이 확인하고, 필요 시 정기적으로(예: 분기 1회) 점검함

### ☑ 운영 시 유의점

- 생활지도의 방식이 특별하다고 해서 일반 영유아 지도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됨. 즉, 발달 지연이나 특수성이 있는 영유아라도 인권·안전·존중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영아의 생활지도는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며 신체적 제지나 강압적 지도가 아닌 정서적 반응과 애착 형성 중심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장애아의 행동 특성상 지속적이거나 개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행동 중재 또는 개별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의 경우 교사와 보호자가 상호 존중의 태도로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관련 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 등



## 02

##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관련 조문

-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에 따라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 ☑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

- 보육활동이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감독하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대소집단·개별 활동, 놀이, 행사, 등·하원, 영유아의 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함

### ☑ 생활지도 불응 시 가능한 조치

-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고시에 제시된 생활지도 원칙과 방식에 따라 지도할 수 있음
-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이를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로 판단하여 원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로 인한 보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 2025)」 참조

## ☑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

- **보육활동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심리상담 또는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또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치료지원 : 보육활동 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치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회복 지원 조치 : 필요 시 근무환경 조정, 임시 휴가 부여,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복귀를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 관련 법령

-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03

## 이의제기



## 관련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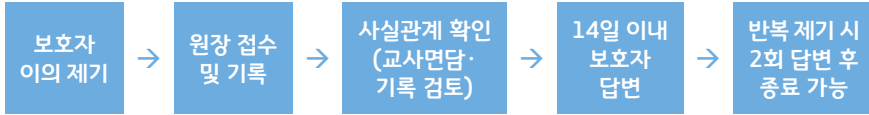
## • 제12조(이의제기)

- ①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의제기 및 원장의 답변 절차

- ①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② 이의제기의 방법으로는 유선, 면담,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보호자는 해당 생활지도의 상황·내용·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기된 이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교사 및 관련자와의 면담, 기록검토 등을 통해 해당 생활지도의 상황, 내용, 방식,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함
- ④ 사실관계 확인 후 원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답변하여야 함
- ⑤ 단, 동일한 사안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되는 경우, 원장은 2회 이상 답변 후 추가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함

〈이의제기 처리 절차(예시)〉



### ☑ 보육활동 보호

-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부모에게 사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만한 대응과 원칙적 대응을 통해 보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음



04

기타(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임 사항)



관련 조문

- **제13조(세부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그 밖에 영유아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어린이집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따라 생활지도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운영 방안은 어린이집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은 법령 및 고시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생활지도 관련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어린이집 규칙에는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 절차, 지도 방법, 보호자 협력 방안, 이의제기 방법 등 생활지도의 실행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

☑ 운영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 및 영유아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함
- 규칙 제·개정 시에는 어린이집 구성원(원장, 교사,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되, 고시의 취지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세부 사항을 정할 때는 보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직원과 보호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규칙은 영유아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생활지도의 목적과 원칙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마련해야 함

## ☑ 어린이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생활지도 세부 항목 예시

- **생활지도 원칙 안내:** 입학 또는 오리엔테이션 시 가정통신문,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생활지도 원칙(지도방식, 금지행위, 이의제기 절차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는다.
- **생활지도 전 협의 및 생활지도 후 조치:** 생활지도 필요 시 교사 간 협의 후 원장에게 보고하며 원장은 적절한 방식의 지도인지 검토한다.
- 생활지도 후에는 영유아를 관찰하고 필요 시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간략히 기록한다.
- **연령별 생활지도 방법:** 영아의 경우 교사의 신체적 보호와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지도하며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한 경우 다른 자극을 제공하거나 환경을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유아의 경우 언어적 설명, 대체활동 제시 등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되짚어보도록 한다.
- **생활지도 시 금지행위:** 신체적 체벌, 위협적 언행, 정서적 비하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강제적인 격리, 고함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의 신체를 제압하거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금지한다.
- **보호자 안내 기준:** 주의 이상의 생활지도 시 보호자에게 즉시, 또는 당일 안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일정을 협의한다.
- **생활지도 상담:** 생활지도 상담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교사의 필요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 약속을 통해 원장 또는 담임교사가 비공개로 상담을 진행한다.

## 05

## 재검토 기한



## 관련 조문

- **제1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IV

## 부록

- 1.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88
- 2. 아동학대 관련 판례 94

## 01

##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6. 22.] [교육부고시 제2025-16호, 2025. 6. 22.,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동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교사"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서의 "대체교사"로 한다.
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
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 활동 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
- 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라. "훈육·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④ 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5조(조언)**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또는 영유아는 영유아의 문제를 해결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보육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 내용은 해당 영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및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이 어린이집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영유아의 행동으로 보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는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훈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훈계할 수 있다.

-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영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교사가 반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품
4.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0조(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 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에 따라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그 밖에 영유아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 6.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02

## 아동학대 관련 판례



## ☑ 아동학대의 유형

### 1.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 2.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 3. 성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

### 4.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 아동학대 관련 판례

### 1. 신체학대

#### ①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가락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른 행위

##### 사례

피해아동 C(6세)와 D(6세)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C의 팔을 잡고 억지로 자신의 책상으로 데리고 간 후 울면서 저항하는 C의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였고, C와 D의 양손 엄지 및 검지 손가락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칠하였다.

##### 학대 인정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톱에 스탬프용 잉크를 칠한 것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1273판결]

#### ② 어린이집 교사가 손으로 아동의 팔과 목을 잡아끌어 목 피부 겉면에 상처가 나게 한 행위

##### 사례

피고인은 2016. 9. 19. 17:0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여, 1세)이 울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4~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또는 상의 목 부분을 잡아끌어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밥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그릇 채로 식사를 들이밀었다.

##### 학대 인정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피해 아동이 입게 되는 신체적 손상 또는 충격의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이에 본 판결은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식습관을 교정해야 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노1257 판결]

### ③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재우려고 머리와 몸을 아래로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경우

#### 사례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1세 전후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몸을 일으키는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아래로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발바닥을 3회 가볍게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입술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수회 두드리거나 이마를 두드렸다.

#### 학대 인정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위(고의)는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 여기서 신체의 손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외과·내과 손상과 함께 모발의 현저한 손상과 같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현저한 신체의 외형적 손상도 포함될 수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평소에 어린이집에서 받거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훈육 방법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 아동이 만 1세 남짓이었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특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음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6365 판결]



본 판결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중 수면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식사하도록 하기 위해 설사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것이라도,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함. 아동을 학대하겠다는 주관적인 동기의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 아동에게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결과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미필적 고의)을 아동학대의 고의로 해석함

#### ④ 어린이집 교사가 주먹으로 입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의 훈육

#####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A(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B(4세)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였으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C(4세)가 울동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렸고, 아동 D(5세)가 가져온 생일떡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중에 D가 허락 받지 않고 아동 E(4세)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E에게 떡을 꺼내라고 하면서 E와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 학대 인정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재연한 체벌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체벌의 강도를 비교적 약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만 4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그 체벌을 상당히 강하고 두렵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체벌로 인하여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귀에 피가 맺히는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 아동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113 판결]



### ⑤ 교사가 아이들간의 갈등상황을 제지하던 중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행위

#### 사례

피고인은 ○○유치원○○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A 및 피해아동B는 각○○반 아동이다. 피고인은 A가 다른 아동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괴롭히는 것을 제지하던 중, A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A를 책상 쪽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앉힌 후 A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B가 같은 반 유치원생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자, 앉아 있는 B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 학대 인정

유치원에서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거나 훈육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도, 그것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향후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191 판결]

### ⑥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든 행위

#### 사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D공원 정자 앞 벤치에서 피해아동 E(4세)가 다른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언성을 높이며 피해아동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리며,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행위를 2~3회 가량 반복하였다.

#### 학대 불인정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485 판결]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훈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2. 정서학대

### ① 어린이집 원장이 2세 아동을 아기 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행위

#### 사례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이자 OO반(1세~3세 미만)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OO반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C는 OO반 보조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아동 G(2세)는 다른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매우 활발하여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 아동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OO반 지도 및 통솔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들은 업무 편의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일명: 부스터)에 앉혀놓기로 공모하였다. 총 26회(최소 2분에서 최대 49분)에 걸쳐, 피해아동이 이미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식탁에 강제로 앉힌 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 학대 인정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다소 부적절한 보육행위를 넘어 피해아동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3.25. 선고 2019고단4059 판결]

### ②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손으로 다른 아동을 때리게 한 행위

#### 사례

어린이집에서 A아동(여, 3세)이 피해아동(여, 3세)의 손에서 책을 빼앗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A아동에게 데리고 가 A아동의 머리를 피해아동쪽으로 돌려주고 피해아동이 손으로 A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게 하였다.

#### 학대 인정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책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였더라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한 아동을 때리도록 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4809 판결]

### ③ 교사가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다른 아동에게 사과하게 한 행위

#### 사례

피고인은 유치원의 교사이고, 피해아동 D(6세)는 위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위 유치원 ○반에서, 피해아동이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발로 의자를 걸어 건드려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아동에게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 어서 사과해'라고 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 학대 인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걸어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본 판결은 피해아동이 앉은 의자를 걸어 넘어뜨린 것과 더불어 피해아동이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킨 것 역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2585 판결]

### ④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

#### 사례

어린이집의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남, 3세)이 다른 원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혼내던 중 피해아동의 오른쪽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3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겼다.

#### 학대 인정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행위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 내지는 훈육의 목적으로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배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1268 판결]

### 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소변이 묻은 하의로 피해 아동의 콧물을 닦은 행위

#### 사례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원아(4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블록놀이를 하면서 앉아 있는 책상 반대쪽으로 피해 아동이 앉아있는 의자를 돌려놓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계속 울고 있는 데도 10분간 피해 아동을 달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는 상태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하자, 다른 아동이 없는 곳으로 가서 바지를 갈아입힐 수 있었음에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입혔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교사와 언쟁을 벌이면서 피해 아동의 젖은 하의와 팬티를 정리하다가,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하의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았다.

#### 학대 인정

피고인은 급한 마음에 소변이 묻지 않은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았을 뿐이라고 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한 것과 다른 교사와의 언쟁 등으로 인해 화가 난 상태로 보였고, 휴지 등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소변에 젖은 옷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은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급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나온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들은 피해 아동의 나이, 기질, 당시 감정과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행위로 보이고, 이는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2446 판결]

## ⑥ 어린이집의 교사가 훈육의 목적으로 아동을 혼자 앉아있도록 한 행위

###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20. 5. 21. 12:29경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피해아동(남, 4세)을 어린이집 교실의 가방보관대 앞에 20분 동안 혼자 앉아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8회에 걸쳐 매회 약 4분 내지 약 26분 간 피해아동을 가방 보관대 앞에 혼자 앉아 있게 하였다.

### 학대 불인정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가방보관대 앞에 혼자 앉아 있게 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였거나 다른 아동들과 다투었거나 생활습관 및 식사습관 교정이 필요하여 보육교사로서 훈육 목적에 의하여 한 행위로 보이는 점, 아동보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타임아웃’이라고 하여 문제행동을 한 아동이 혼자서 시간을 가지며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보호자와 차분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훈육방법이 통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훈육방법 중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모두 아동학대로 본다면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훈육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행위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21노1324판결]



아동을 혼자 앉아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타임아웃’이 훈육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동기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 3. 성학대

#### ①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다른 원생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키게 한 경우

##### 사례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평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피해 아동(6세)을 훈육하겠다고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세운 후 갑자기 아동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아래로 내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 학대 인정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희롱 내지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8. 선고 2018고단736 판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고]



## 4. 방임

### ① 어린이집 교사가 소변 실수를 한 아동의 옷을 벗게한 후 방치한 행위

#### 사례

피고인은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가 교실 문앞에서 가방을 풀고 외투를 벗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문 앞에 방치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약 31분간 방임하였다. 또한 다른 날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옷을 갈아입히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반라인 상태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약 26분간 방임하였다.

#### 학대 인정

피고인이 해당 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등 이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서 보육 방법의 상당한 범위를 넘어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을 방임하였음을 인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2. 6. 선고 2024고단384 판결]

### ② 폭염인 날씨에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사례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다. 피고인은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2시간을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학대 인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적 학대를 하고 방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판단함.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37 판결]

### ③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마스크 스트랩이 걸려 울고 있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 사례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마스크 스트랩을 빼어내기 위해 울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pc를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마스크 스트랩이 아이의 목에 걸려 상해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행위를 도와주지 않았다. 또한 등원한 아동이 교실에 입실한 08:34분부터 교실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한 때부터 피해아동을 계속 방치하던 중, 11:00경부터 11:27경까지 H반인 옆 교실에서 태블릿 수업을 위해 이동한 뒤 아이가 D반 교실에 혼자 있음을 알면서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혼자 교실에 내버려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 학대 인정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겪은 아동학대 범행을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입을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다라고 판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85 판결]

### ④ 어린이집 단체 놀이 시간에 아동을 교실에 남겨둔 행위

#### 사례

피고인은 5세 어린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단체놀이 시간에 이미 밖으로 나간 다른 원생들에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약 30분간 교실에 남겨두었으며, 점심시간에 다른 원생들에게 모두 배식을 한 후 피해아동에게 약 16분간 배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학대 인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들을 학대 내지 방임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85 판결]

### 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서로 다툰 후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담당 아동을 돌보지 않은 경우

#### 사례

피고인 甲은 ○○어린이집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乙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의 아동으로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乙이 돌보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아파트의 한 가구 내에서 운영되며 원장과 교사 3명이 아동 12명을 돌보고 있는 곳이다.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원생들의 부모에게 자신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약 2시간(14~16시) 동안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甲은 말다툼 중 화가 나 자신이 돌보던 피해 아동을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떠 나버렸다.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떠난 후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보거나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지 않고, 정해진 간식을 지급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채 방치했다. 피해 아동은 이날 하원 시에 열이 나 저녁에 병원에 가야 했고, 급성 편도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 학대 불인정

피해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내용은 오후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약 30분 동안 아무런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방임행위를 두고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873 판결]



### ⑥ 유치원 원장과 운전기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버스 안에 방치한 행위

#### 사례

피고인 甲은 유치원 통학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乙은 유치원의 원장이다. 피해 아동을 비롯한 원생들은 통학버스에 나누어 타고 박물관에 견학을 갔다가 일정이 늦어진 바람에 점심시간을 넘겨 유치원에 도착하였다. 피해 아동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바람에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피고인 甲은 버스를 주차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였다. 피고인 乙은 점심식사를 챙겨주다가 피해 아동의 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을 찾아 여기 저기 살펴보다가 피고인에게 버스 안에 피해 아동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甲은 버스 안에 피해 아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유치원에 돌아왔는데, 피고인 甲이 버스에 돌아올 때까지 피해 아동은 약 13분 동안 버스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다.

#### 학대 불인정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을 동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바로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 아동이 버스에 혼자서 방치된 시간은 약 13분 정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발견한 다음 바로 피해 아동을 유치원에 데려왔고, 돌아오는 길에 울음을 터뜨리는 등 놀란 피해 아동을 달래면서 음료와 점심식사를 챙겨주었다. 피고인 乙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그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에게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임행위에 이르렀거나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87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아동이 방치된 시간이 13분으로 짧았고, 이후에 바로 긴급하게 귀원 조치를 취하고, 아동을 안심시켰으며, 바로 아동의 부모에게 알림으로써 방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

※ 관련 출처: 「2020-2022 아동학대사건 판례집\_아동권리보장원(2024)」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_아동권리보장원(2020)」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_경찰청(2024)」

#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Tel. 1661-5666

**집필진** 김정화(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권기남(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검토진** 변성숙(에듀로(Edu-law) 교육법률 연구소 변호사)  
전다운(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총괄기획** 김윤아(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본부 본부장)  
서영주(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부장)  
박진주(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차장)  
조하나(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대리)

**편집디자인** 디자인여백플러스

※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